

○ 동반성장론 B2B 전자결제서비스 이용수수료율 기준표 개정 대비표

1. 주요 개정내용

구 분	개정 전	개정 후	비 고
약관, 약정서명	동반성장론 B2B 전자결제서비스 이용수수료율 기준표 (구 하나은행)	동반성장론 B2B 전자결제서비스 이용수수료율 기준표	(구)하나은행과 (구)한국외환은행의 전산통합에 따라 통합은행에서 사용하는 약정서명에 (구 하나은행) 명칭 삭제

2. 개정 시행일 : 2016년 6월 7일

3. 기 거래고객에 대한 적용

: 개정된 내용은 개정일 이후 신규, 연장, 갱신 등 약정분부터 적용